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899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여짐

나. 시행 첫 해인 '23년 기부금*은 전액 정기·공금예금 예치 예정

* '23년도 예상 기부금액 : 약 1억 2천만원 (일평균 모금액 토대로 산출)

<연도별 예상 모금액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예상 모금액	123,005	132,599	142,942	154,091	166,110	718,747
운용수익	1,632	2,678	2,887	3,112	3,355	13,664
계	124,637	135,277	145,829	157,203	169,465	732,411

Ⅲ.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2년 12월,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6조¹⁾가 정한 고향사랑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²⁾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³⁾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⁴⁾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
 -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방기금법」 제9조⁵⁾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⁶⁾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2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분·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1. 기금 조성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3년도에 1억 2,4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7)에 근거하여 금년도말 조성액을 1억 2,4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됨

〈표 3-1〉 고향사랑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 2 2 년 도 말 조 성 액 ①	' 2 3 년 도 조 성 계 획			' 2 3 년 도 말 조 성 액 ⑤=④+①
	수 입 ②	지 출 ③	증 감 ④=②-③	
-	124	0	124	전액예치

〈표 3-2〉 고향사랑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고향사랑기금	'23년도말 조성액①	융자금 미회수채권②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124	124	-	-	12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7)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0

2. 기금 수입계획

- **수입계획**의 경우, 기부금 수입(6,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1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지난 5월 30일 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중 고향사랑기금 **전출금**(60,660천원)을 편성하여 전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이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됨

〈표 3-3〉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입과목				'23년 수입액 (A)	전년도 수입액 (B)	증 감 (A-B)
장	관	항	목			
합 계				124	-	124
세외수입				64	-	64
			경상적세외수입	1	-	1
			이자수입	1	-	1
			공공예금 이자수입	1	-	1
			임시적세외수입	62	-	62
			기타수입	62	-	62
			기부금 수입	62	-	6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	-	60
			내부거래	60		60
			전입금	60	-	60
			기타회계 전입금	60	-	60

3. 기금 지출계획

○ **지출계획**의 경우, 예치금 항목으로 1억 2,400만원 전액을 계상한 바,

-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 '23년도의 경우, 기부금은 전액 정기·공금예금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한 것으로 검토됨

〈표 3-4〉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23년 지출액 (A)	전년도 지출액 (B)	증 감 (A-B)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합 계						124	-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
	재정·금융					124	-	-
		재무활동				124	-	-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124	-	-
				여유자금 예치		124	-	-
				예치금		124	-	-